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약해져 있는 옥외광고물(간판 등)이 흔들리거나 추락해 인명사고와 건물 자동차 파손 등 재난사고로 이어져.

<옥외광고물(간판) 안전점검>

- 근 거 :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6조
- 대상 광고물
- √ 가로형 간판 :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된 간판(입체형 제외), 한변 길이 10m 이상
- √ 돌출간판 : 지면에서 높이 5m 이상이고, 한 면의 면적 1m² 이상
- √ 옥상간판 : 전체 옥상간판
 - (높이 4m 미만의 볼링핀 모형, 도료나 입체형 표시 광고물 제외)
- √ 애드벌룬 : 높이 4m 이상인 게시 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
- √ 지주이용간판 등 : 높이 4m 이상(공공시설·교통시설이용광고물, 현수막 지정게시시설)

옥외광고물(간판) *자 가 점 검*





- 2. 자재 및 고정상태
- 3. 용접상태
- 4. 배수 및 방수상태
- 5. 전기배선의 노후 및 파손상태
- 6. 누전차단기 설치와 작동여부
- 7. 조명상태





- 📦 광고물 ↔ 브라켓·볼트 벽체간 유격. 흔들림 발생시 보수 재시공
- ❷ 용접부위 균열 → 재용접·용접부위도장
- 📦 광고물 균열, 파손, 뒤틀림, 외장파손 → 보수·수리 또는 철거
- ፟ 부식·누수·누전 → 하부 배수구 설치, 누전차단기 설치, 전기배선 재시공
- 📦 조명 깜박임. 꺼짐. 부분 조명 켜짐
 - → 형광등. 안정기 교체 등

[옥외광고물 자가 점검 안내]

여름철 풍수해 대비 소규모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광고물 소유 주(광고주·관리자 등)에게 서울좋은간판 홈페이지(http://goodsign.seoul.go.kr)를 통한 옥외광고물(간판) 자가 점검 자료 제공